I·SEOUL·U

서울케어

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안내 】

안녕하십니까.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

서울시에서는 2019. 6. 1.부터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, 특수고용직종사자,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)에게 연간 최대 11일(입원 10일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) 서울시 생활임금('19년 **1일 81,180원**)을 지급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'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입원이나 건강검진 받느라 못 번 생활비, 이번기회에 신청하셔서 받으세요!!!

---- 사 업 개 요 -----

○ 시 행 일: 2019. 6. 1.

○ 대　　상: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

- (신청 자격) 3개월 이상 근로(근무일 수 10일/월 이상) 혹은 3개월 이상 사업장 유지
- (소득·재산기준) 중위소득 100%이하 이면서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

※ 보건복지부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(단위 : 원/월)

가구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기준중위소득	1,707,008	2,906,528	3,760,032	4,613,536	5,467,040	6,320,544	7,174,048

〈 주요대상자 군 〉

- 대리운전자, 아르바이트, 택배기사, 아이돌봄이, 프리랜서, 학원강사, 봉제종사자. 요양보호사 등 근로취약계층
- 1인 자영업자 등 영세자영업자
- 학습지교사,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

○ 지원금액: 1일 81,180원('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)

○ 지원기간: 연간 최대 11일(입원 10일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)

○ 접 수 처: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

○ 홈페이지: http://news.seoul.go.kr/welfare/archives/508129

○ 문 의 처: 02)120

I·SEOUL·U
너와 나의 서울

입원이나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에게 **1인 1년 최대 892,980원** 생활비를 드립니다!

아파도 치료받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

서울형 **유급병가지원**

일과 **건강**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
서울시가 **세밀**하고 **촘촘**하게

지원대상

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(암 검진 제외) 실시한 경우

- 근로소득자 : 입원(공단 일반건강검진)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한 자
- 사업소득자 : 입원(공단 일반건강검진)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한 자
- 중복 수혜자 제외 : 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기초보장, 긴급복지(국가형, 서울형), 산재보험, 실업급여, 자동차보험

사업시행일

2019. 6. 1.부터 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신청 가능

지원일수

연 11일(입원 10일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)

※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 비대상

지원금액

1일 ₩ 81,180 ('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)

신청문의 서울시가 함께하는 **촘촘한 건강복지**

주소지 관할
동 주민센터 · 보건소

120 다산콜센터

아파도 치료받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 **서울형 유급병가지원**

I·SEOUL·U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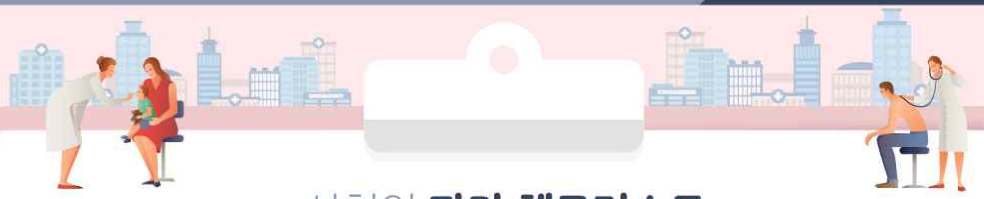

신청인 **자가 체크리스트**

총 7개 항목 모두 '예' 해당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가능 대상자

[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여부 결정]

1	2018. 12. 31부터 현재까지 계속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.	■ 예 ■ 아니오
2	입원(검진) 발생 전월 포함 3개월 전부터 입원(검진)일까지 국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였다.	■ 예 ■ 아니오
3-1	[입원] 2019. 6. 1. 이후 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,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. (단,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)	■ 예 ■ 아니오
3-2	[검진] 2019. 6. 1.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. ※ 3-1, 3-2중 1개 이상 충족	■ 예 ■ 아니오
4-1	[근로소득자] 입원(검진)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하였다.	■ 예 ■ 아니오
4-2	[사업소득자] 입원(검진)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하였다. ※ 4-1, 4-2중 1개 충족	■ 예 ■ 아니오
5	[소득]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[재산]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5천만원 이하이다. (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)	■ 예 ■ 아니오

기준 중위소득 100% 선정 기준

소득 · 재산 기준 모두 충족 시 해당

- 소득 :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 : 일반재산액 2억 5천만원 이하

[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] (단위 : 원/월)

가구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기준 중위소득	1,707,008	2,906,528	3,760,032	4,613,536	5,467,040	6,320,544	7,174,048

※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: 1인 증가시마다 853,504원씩 증가(8인 가구 : 8,027,552원)

6	입원(검진) 기간이 속한 월에 **국민기초생활수급, 서울형 기초보장, 국가형 긴급복지, 서울형 긴급복지**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.	■ 예 ■ 아니오
7	입원(검진)기간이 속한 월에 **실업급여, 산재보험, 자동차보험**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입원(검진)기간이 속한 월에 대하여 신청계획이 없다.	■ 예 ■ 아니오

민원인 지참서류 - 총 3종

① 입원 또는 검진서류(입·퇴원확인서, 진료비영수증 또는 검진확인·결과서)
② 신청인 통장사본
③ 사업자등록증사본,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,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(해당자에 한함)

동 주민센터 내 발급(작성) 서류 - 총 7종

① 주민등록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④ 근로확인서류(근로복지공단 팩스전송 또는 자필작성)
⑤ 신청서 ⑥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⑦ 소득·재산정보제공동의서

※ ①~③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

서울시가 함께하는 **촘촘한 건강복지**